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명칭 변경〉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3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참고사항	1
IV. 검토의견	2
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명칭 변경 (안 별표)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준현의원 등 26인

나. 발 의 일 : 2025. 9. 19.

다. 회 부 일 : 2025. 9.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금관리 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명칭 변경(안 별표)

현행	개정안
○ 부담금 명칭(별표)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부담금 명칭(별표) - 서민금융안정기금 출연금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1)에 따르면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고, 현행법 별표 제94호에 부담금의 하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함)」 제47조제2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명칭을 ‘서민금융안정기금 출연금’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서민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
-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진흥원이 관리·운용
-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서민금융안정기금에 출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금융회사가 대출 등을 통해 얻는 이익의

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일정 부분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동 출연금을 활용하여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임.²⁾

개정안은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존에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던 금액을 서민금융안정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부담금의 명칭 변경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서민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될 경우 동 개정안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³⁾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등의 알선
 3.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연구 및 대외 교류·협력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5.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6.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7.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8.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9.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10. 삭제 <2021. 6. 8.>
 11. 제29조에 따른 서민금융협회의 운영 사무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운용
 13.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14. 제79조제3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6.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3) 기획재정부도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중 해당 부담금의 명칭 변경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에 따른 부수적 사항이므로, 해당 기금 설치 여부에 관한 「국가재정법」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연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9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서민 금융진흥원 출연금	별표 94. ----- ---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안정 기금 출연금

문의처
02)6788-5153